

2021 하우스징브랜드페어

접수No.

20 . . .

17th · 18th HOUSING BRAND FAIR

17회 1. 21(목) ▶ 24(일) · **18회** 4. 29(목) ▶ 5. 2(일) **coex**

출품신청서 및 계약서

◎ 출품업체

회 사 명	(국문)			(영문)	
주 소				전 화	
				팩 스	
대 표 자	성 명		휴대폰		E-mail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홈페이지
담 당 자	성 명		휴대폰		직통전화
	부 서		직 위		E-mail
세금계산서 담당자					E-mail

◎ 출품부문

- 참가 전시회 (체크표시 □) □ 17회 (1월 21일~1월 24일) □ 18회 (4월 29일~5월 2일)

출품 부문	전시 품목	수량

▣ 출품신청 및 사용납입명세

구분		신청내역	단가(VAT 별도)	비고	
일 반 사 항	독립부스	일반신청	Booth 2,700,000원/부스	조기 신청할인의 경우 접수 7일 이내 계약금(50%) 입금 시 적용	
		20% 할인	Booth 2,160,000원/부스		17회 15부스 이상 조기신청(2020. 11. 22까지) 18회 15부스 이상 조기신청(2021. 2. 2까지)
		15% 할인	Booth 2,295,000원/부스		17회 10부스 이상 조기신청(2020. 11. 22까지) 18회 10부스 이상 조기신청(2021. 2. 2까지)
		10% 할인	Booth 2,430,000원/부스		17회 조기신청(2020. 11. 22까지) 18회 조기신청(2021. 2. 2까지)
	기본부스	일반신청	Booth 2,900,000원/부스		
		10% 할인	Booth 2,610,000원/부스		17회 조기신청(2020. 11. 22까지) 18회 조기신청(2021. 2. 2까지)
선 택 사 항	전기 (추가)	단상 220V(조명)	kw	부스당 1kw 무료제공 추가시 신청	
		단상 220V(동력)	kw		
		삼상 220V	kw		
		삼상 380V	kw		
		24시간용	kw		
	전화		대	70,000원/대	
	참관객 데이터 시스템		대	200,000원/대	전자명함 리더기
	LAN 회선		회선	200,000원/회선	
	급배수		개소	200,000원/개소	
	압축 공기		개소	200,000원/개소	

‘2021 하우스징브랜드페어’의 출품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출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2021 하우스징브랜드페어 사무국 귀중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8길5, 4층 (주)리드엑스포 TEL. (02)515-4800 FAX. (02)517-0400

2021 하우스징브랜드페어

17th · 18th HOUSING BRAND FAIR

17회 1. 21(목) ▶ 24(일) · **18회** 4. 29(목) ▶ 5. 2(일) **coex**

전시회 출품규정 및 계약조건

제 1조(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1 하우스징브랜드페어(17th·18th Housing Brand Fair 2021)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8길5, 4층 (주)리드엑스포를 말한다.

제 2조(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우스징브랜드페어 사무국이 제작한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조(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락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조(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시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17회 2021년 1월 8일까지, 18회 2021년 4월 9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조(해약 및 전시회의 취소)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시, 이미 납입한 참가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자체시공일 경우 반드시 평면/입면도(중량 포함) 및 작업자 명단을 사무국에 제출후 시공 하여야 한다.
※ 코엑스 전시장 운영규정 엄수(전시안내 매뉴얼 참조)
2.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 하여야 한다.

제 8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9조(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자사 부스 장치물 및 전시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0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 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할 경우 출품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출품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조(분쟁해결)

1. 본 출품규정의 해석에 관해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